

# 서울특별시 장애인의사소통권리증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1589
----------	------

제출년월일 : 2020년 5월 25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 1. 제안이유

- 가. 서울특별시 장애인의사소통권리증진센터 운영사무는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에 의거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는 사무로서
- 나. 민간의 전문지식을 활용 각 장애유형에 맞는 의사소통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의사소통 곤란 장애인(뇌병변장애인 등)들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위해 보완대체의사소통(AAC) 중재서비스를 집중적으로 지원하여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확보를 실현하기 위해 관련 사무의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항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사업개요

- 사업명 : 서울특별시 장애인의사소통권리증진센터 운영
- 지원대상 : 서울시 의사소통 곤란 장애인
- 사업내용 : 각 장애유형에 맞는 의사소통지원서비스를 제공 및 의사소통권리 증진 활동
- 운영방법 : 서울시 소재 전문기관 민간위탁

## 나. 주요 위탁내용

- 위탁기간 : 3년('20. 9. 1. ~ '23. 8. 31.)
- 위탁사무 : 서울특별시 장애인의사소통권리증진센터 운영 사무
  - 장애유형에 맞는 의사소통지원서비스 제공
    - 장애유형·특성별 의사소통지원 욕구 조사 및 데이터 수집·관리
  - 의사소통지원서비스 홍보 및 정보 플랫폼 구축
    - 의사소통권리 홍보, 서비스 이용, 개별 지원 계획 수립
    - 온·오프라인 홍보자료 준비 및 의사소통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 의사소통지원 서비스 확대 및 지원체계 마련
  - 의사소통권리 인식개선 매뉴얼 개발 및 보급
  - 장애인 당사자 역량강화 및 지역사회 의사소통지원 협조 체계 구축 등
- 소요예산 : 180백만원(2020년)
- 수탁기관 선정방법 : 공개경쟁

## 다. 추진근거

- 「서울시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조례」 제8조
- 서울시 장애인자립지원 5개년(2018~2022)계획
- 「뇌병변장애인 지원 마스터플랜」 (시장방침 제181호, '19.9.2.)

## 라. 민간위탁 필요성

- 서울시에서 직영으로 하는 것보다 전문기관에 위탁시 인력 및 예산절감 효과가 크며, 민간의 전문성을 이용하여 사용자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
- 동 사업은 운영 및 홍보 등 사업의 전 과정에서 수탁기관이 보유한 사회복지기관(단체) 등과의 네트워크 및 지역사회 자원 등을 활용한 사업 수행이 요구됨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서울특별시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조례 제8조 제1항

나. 예산조치

○ 2020년 6월 추경편성

○ 기존 서울시 보조기기센터 운영사업으로 편성된 180백만원을 감액

○ 서울시 장애인의사소통권리증진센터 운영사업으로 신규 편성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작성자 :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권익보장팀 김상철(☎2133 - 7362)